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 - 072호

2024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 공고(상반기)

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2일

한국발명진흥회장

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개요

○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·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)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「발명진흥법」 제39조(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)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

※ 관련근거 :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8장 “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” 등

2 신청 자격 요건

○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

-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,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
-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

○ 기간연장 대상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을 등록·보유 유지한(전용실시권·통상실시권 포함) 기업

-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,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(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)
-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(붙임6)를 제출해야 함

○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

《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·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 》

-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(https://www.g2b.go.kr:8053/main/main.do) 로그인
  → 홈페이지 상단의 3번째 메뉴인 "목록화요청" 클릭
  → 품목(식별번호) 등록 → 동의함 → 품목등록 요청하기 → 검색어 입력 → 확인
  → 추천품목 클릭 -> 신청서 작성 -> 요청

※ 관련 문의는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가능(1588-0800, 시스템 문의:070-4056-6399)

○ 기간연장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,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

○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, 우수발명품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일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

3 신청 안내

○ 사업 공고 : 2024. 5. 2.

○ 신청 접수기간 : '24. 5. 7.(화) 10:00 ~ 5. 20.(월) 16:00

○ 신청 방법

- 온라인 접수

* 홈페이지 방문(http://www.kipa.org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 → 지식재산 금융·사업화 →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→ 사업신청(연장)

- 관련 문의

담 당 자	전 화	E-mail
박 승 민 계장	02-3459-2931	pp@kipa.org

* 접수시스템 문의는 070-7703-6365

○ 작성 서류

※ 작성파일 서식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물 및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관련 다운로드 가능

- (필수)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유효기간(연장) 신청서(붙임1)
- 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붙임2-1/2-2) * 각각 작성 제출
- (필수)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 설명서(붙임3)
- (필수)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(연장) 신청확인서(붙임4)
- (필수) 신청제품 규격목록(붙임5)
- (필수)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(별도 엑셀파일 작성)
- (해당시)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공동권리자 동의서(붙임6)
- (해당시) 제품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 추가자료(별도 엑셀파일 작성)

○ 평가 방법

- 기간연장 심사 시, 미비한 서류를 확인하여 한국발명진흥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
-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기간연장 “적합“, “부적합”을 판정함

○ 평가 내용

-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업무 최초 선정 시 제출서류와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를 비교하여 동일제품 여부를 판단하되,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

4 선정 시 혜택

○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대상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및 우수발명품 마크(BI)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

- 우선구매추천의 연장 유효기간 : 연장일로부터 3년간
(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)

○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

- 유효기간 내 1회 추천
(최초 : 최대 20개 공공기관 추천, (희망 시) 추가 : 최대 10개 공공기관 추천)

○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

○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(기술&품질 평가 면제)

- (벤처기업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
- (창업기업)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

※ 벤처기업 혹은 창업기업 한정

○ 중소벤처기업부 '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'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

- (기업)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,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
- (제품) 우수발명품,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,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,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

○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,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(NEP)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

* 관련규정 : 신제품(NEP)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

○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,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

* 관련규정 : 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규정 제8조 제2항,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

6 기타사항

○ 하반기 일정 : '23. 10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

○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
-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
- 신청한 제품과 특허와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
-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
- 해당 권리 또는 제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
-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,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
-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/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
-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(신청 업체가 아닌)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
-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
-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
- 해당권리의 이전.소멸.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
-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·부정표시 및 우수발명품 BI (, GOOD INVENTION) 의 허위·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

○ 이의신청 및 처리

-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-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
-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다만,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음

○ 신청서 수정 방법(접수 기간 내 가능)

-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, MY KIPA 사업신청내역에서 수정

[붙임1]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유효기간(연장) 신청서

우수발명품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6">신청제품</td><td rowspan="2">우수발명품명</td><td rowspan="2"></td><td>기존 확인서 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존 확인서 유효기간</td><td></td></tr>
<tr><td>권리번호 (등록번호)</td><td></td><td>발명의 명칭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일반제품 대비 차별성 (연장시점 기준)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<table><tr><th>모델명</th><th>물품분류번호</th><th>품명</th><th>물품식별번호</th><th>품목명</th></tr>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</table>*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가 다수일 경우 [별지 제14호 서식]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첨부 (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/ 미제출시 관련 점수 반영불가)</td></tr>
<tr><td>연장신청 사유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청업체</td><td>업체명</td><td></td><td>사업자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개업연월일</td><td></td><td>본사주소</td><td></td></tr>
<tr><td>총자산</td><td>백만원</td><td>상시종업원수</td><td>명</td></tr>
<tr><td>연간 생산능력</td><td>개</td><td>연간 매출액</td><td>백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대표청자(신인)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td>사무실 전화</td><td></td></tr>
<tr><td>휴대폰</td><td></td><td>이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실무자</td><td>성명(직위)</td><td></td><td>사무실 전화</td><td></td></tr>
<tr><td>휴대폰</td><td></td><td>이메일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본인의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대표자(신청인) (인)

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

☞ **제출 서류**

1. 특허등록원부(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함)
2. 등록특허공보(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함)
3. 신청제품설명서(연장신청 시점 기준 개선된 사항을 위주로 작성)
4. 신청확인서 및 동의서
5.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6.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(연장신청 시점 기준), 공장등록증 또는 협업생산 승인신청서
7. 기존 발급받았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

[붙임2-1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_대표자

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
동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**수집・이용**하거나, 제3자에게 **제공**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[개인정보 수집・이용에 대한 동의]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제공된 정보는 동 사업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. ▪ 본인확인, 식별: 성명, 사무실 전화, 휴대폰, 이메일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사무실 전화, 휴대폰, 이메일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
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. 개인정보 수립・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**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**	
이에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**수집・이용**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*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** 20 년 월 일 성명: (서명 또는 인) **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**	

[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]

제공 목적	① 특허청 및 조달청 등의 지원 사업 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② 특허청 및 조달청 유관기관 조달물품 지원사업 안내 등 ③ 해외진출 연계지원을 위한 사업 안내 등
제공 항목	성명, 사무실 전화, 휴대폰, 이메일
제공받는 자	① 특허청 및 조달청 ② 조달청 유관기관: 중소기업 유통센터, (사)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
보유·이용 기간	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통보일 후 5년간
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**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사업의 참여 제한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**	
이에 본인은 위의 제공항목을 특허청, 유관기관 및 특허청 협력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*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** 20 년 월 일 성명: (서명 또는 인) **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**	

[붙임2-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_실무자

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

동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**수집・이용**하거나, 제3자에게 **제공**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[개인정보 수집・이용에 대한 동의]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제공된 정보는 동 사업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. ▪ 본인확인, 식별: 성명, 직위, 사무실 전화, 휴대폰, 이메일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직위, 사무실 전화, 휴대폰, 이메일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
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사항입니다. 개인정보 수립・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**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**	
이에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**수집・이용**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*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** 20 년 월 일 성명: (서명 또는 인) **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**	

[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]

제공 목적	① 특허청 및 조달청 등의 지원 사업 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② 특허청 및 조달청 유관기관 조달물품 지원사업 안내 등 ③ 해외진출 연계지원을 위한 사업 안내 등
제공 항목	성명, 직위, 사무실 전화, 휴대폰, 이메일
제공받는 자	① 특허청 및 조달청 ② 조달청 유관기관: 중소기업 유통센터, (사)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
보유·이용 기간	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통보일 후 5년간
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**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사업의 참여 제한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**	
이에 본인은 위의 제공항목을 특허청, 유관기관 및 특허청 협력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*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** 20 년 월 일 성명: (서명 또는 인) **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**	

[붙임3]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 설명서

신청제품 설명서

1. 신청제품 개요

업체명		제품명	

모델명	물품분류번호	품명 (물품분류명)	물품식별번호	품목명(식별명)

***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가 다수일 경우 [별지 제14호 서식]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첨부 (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/ 미제출시 관련 점수 반영불가)**

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

*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히 소개

* 도면, 설계도, 제품사진 등 활용하여 제품의 구조 및 작동 원리 설명

* [요약] 각 제품규격 및 (모델) / 물품분류 / 식별번호 등에 해당되는
지식재산권 기술 적용 내용 요약 정리 작성

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

* 기존기술 및 제품 대비

①기술의 고도성, ②제품의 차별성·혁신성, ③제품의 품질 우수성 설명
- 보유 지식재산권 적용 기술에 대한 타 제품 비교 또는 관련 기술 우수성
세부내용 설명 (제품 및 규격 모델명에 따라 각각 작성)

*** 객관적인 지표들을 기준으로 설명**
-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등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 (인증서 인용 시 반드시 증빙 첨부)

제품의 구매효과성

* 경쟁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가격경쟁력, 대체우위성 설명
- 주요 경쟁제품과의 비교

구분	주요경쟁사(경쟁사명)	신청기업
제품명		
제품사진		
판매금액		
시장점유율 (%)		
제품비교	* 제품 규격 모델별 각각작성	* 제품 규격 모델별 각각작성

* 제품의 시장성 (제품시장의 규모, 성장가능성) 설명

* 공공조달 및 구매추천의 적합성 및 효과성 서술

*** 객관적인 지표들을 기준으로 설명**

품질보증 및 물품공급 능력

* 품질관리 정도, 품질관련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 능력 서술
- 제품의 안전성, 내구성 및 수명 등 서술

* 연간생산능력 서술

*** 객관적인 지표들을 기준으로 설명**
-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또는 물품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
  (인용 시 반드시 증빙 첨부)

2. 특허(실용신안) 권리 개요 및 제품 적용내용

등록번호		등록일 (존속기간)	
권리자		발명의 명칭	
적용 제품규격 (모델명)		물품분류번호	
		식별번호	

발명·고안의 내용(간략히 작성)

<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>

※작성방법

모든 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할 필요는 없고,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

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을 의미(예: 청구항 1)

ex) 청구항 1

렌즈 장착부가 구비된 틀 형태로서 격판을 통해 상기 렌즈 장착부와 구획되는 코필터 수납부가 구비되고, 일측의 밀착띠를 통해 점검자의 안면에 밀착되는 **보안경 본체(10)**와;

상기 보안경 본체의 렌즈 장착부에 장착되는 **보호 렌즈(20)**와;

상기 보안경 본체의 좌우 양측에 각각 연장 형성되며 점검자의 귀에 걸리는 한 쌍의 **다리(30, 40)**와;

상기 보안경 본체의 코필터 수납부에 장착되며 코에 흡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이물질을 여과하는 **코필터(50)**

구분	청구항 1	신청제품 적용 여부	특허적용 대비결과
구성1	보안경 본체	* 제품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특허기술 적용 내용 기술 * 사진 및 도면으로 판단이 어려운 특허의 경우, 시험성적서 등을 활용하여 기술 (증빙 별첨)	
구성2	보호렌즈		
구성3	다리		
구성4	코필터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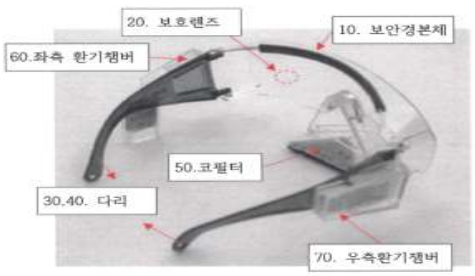	신청제품에 대한 해당 특허 적용부분별 세부 적용 설명

3. 신청업체 일반 현황

업체명				소재지 (본사)	
종업원수	명	자본금	백만원	주생산품	
개발인력	명		설계인력	명	
사 업 자 등록번호			공 장 정 보	(등록번호) (소재지)	
총 매출 (억원)	(직전년도) (금년실적, 계획)		총 수출 (백만$)	(직전년도) (금년실적, 계획)	
신청제품 매출(억원)	(직전년도) (금년실적, 계획)		신청제품 수출(백만$)	(직전년도) (금년실적, 계획)	
주거래처			신청제품 주수요처		
신청 제품의 타 기관 인증 현황					

□ 주요 판매실적

판매처	판매수량	주소	전화번호 (팩스번호)	구매처 담당자
				부서 : 성명 :

□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(Main특허 외 관련특허)

구 분	등록번호	등록일	명 칭
특 허			
실용신안			
디자인			

□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선정 시 활용계획

* 본 지원사업 선정 시 활용계획 간략히 설명 * 신청제품의 예상 수요처(공공기관) 및 예상 수요 기재 * 향후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간략히 기재 * 연장신청의 경우 연장신청 사유 기재

[붙임4]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(연장) 신청확인서

신 청 확 인 서

□ 권리 번호 :

□ 발명(고안, 디자인)의 명칭 :

□ 발명품(제품)의 명칭 :

□ (대표) 모델명 :

□ (대표) 물품분류번호 :

□ (대표) 물품식별번호 :

본 신청제품은 최초 추천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하며, 「발명진흥법 제39조」에 의거 본인의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연장 신청합니다.

추후 「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관리운영지침 4조 나 및 7조」에 따라, 추천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또는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□ 확인자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[붙임5] 신청제품 규격목록

기본 정보						
신청 업체	업체명		신청제품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	
제품 규격 정보						
구분	물품분류번호	물품식별번호	모델명	치수(㎜)	기준(용도 등)	비고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2						
13						
14						
15						

20 . . .

업 체 명 :

대표자(신청인) : (인)

* 신청제품 규격목록에 적혀 있는 모든 제품의 시험성적서 첨부 필요
* 신정제품의 규격목록이 10개 이상일 경우, 용도 등 기준을 정하여 규격목록을 분류하고, 그 분류에 따라 각 분류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능 인증(서)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평가항목 점수 인정
* SW 등 규격명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명(모델명) 기입, 치수 등은 공란 처리 무방

[붙임6]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공동권리자 동의서

동 의 서

성 명(업체명) : (인)
주 소 :

위 사람에게 본인의 다음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 동의함

- 다 음 -

o 권 리 번 호 :
o 권 리 명 칭 :

내 용 :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과 관련하여 사업신청, 선정여부 및 이에 따른 혜택 등 일체의 행위

20 . . .

o 동 의 자
소속/직위 :
성명(업체명) : (인)
o 피 동 의 자
소속/직위 :
성명(업체명) : (인)

* 붙임 : 인감증명서 각 1부. 끝

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